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1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2.

발 의 자: 김주영・이학영・문정복

김태선 · 안호영 · 박홍배

박 정・강득구・박정현

박상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,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 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3항·제6항 및 제9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	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
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	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	③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7년 12월 31일</u>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
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	6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7년 12월 31일</u>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
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	9
터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조	<u>2027년 12월 31일</u>
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	
는 자동차에 적용한다.	